

유선설비기기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

대상기기	시험수수료 (원)	시험처리기간 (1일 = 8hrs)
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	1,000,000	2 일
102 극성반전/타이트링크(2선, 4선식)/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/전용회선 (링다운, 실선대역내 포함)방식의 기기	1,200,000	2 일
103-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(64kbps 이하)	1,200,000	1 일
103-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(2,048kbps)	1,200,000	1 일
103-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(44,736kbps)	1,200,000	1 일
104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	1,000,000	1 일
107 비대칭 디지털가입자 회선 접속장치	1,700,000	3 일
108 초고속 디지털가입자 회선 접속장치	1,700,000	3 일
112-2 방송공동수신설비류(제한수신시험 제외)	수동소자 700,000	2 일
	능동소자 2,300,000	3 일
113-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	1,800,000	3 일
113-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(제한 수신시험 제외)	1,300,000	3 일
116 광통신용 회선 종단장치	1,500,000	2 일
117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	1,700,000	2 일
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	300,000	1 일

※ Note

1. 시험수수료

- 1) 카드 추가비용: 카드회선 종류 당 25만원 추가
(64 kbps, 2,048 kbps, 44,736 kbps, 155,520 kbps)
- 2) 2 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 % 를 추가 적용.
- 2 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(예: AC, DC,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)
- 3)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.5 배, 대형은 2 배, 대형 3 상은 3 배의 수수료를 적용.
- 4)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.

2. 시험처리기간: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, 하기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.

- 1) 제품의 크기, 무게, 전원사양,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.
- 2) 시료 입고 후 시험을 위한 제품 셋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시작 후 시험 완료되는 시간임.
- 3) 시험 시작 후 부적합이 없는 조건이며, 순수한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성적서 발행기간은 미포함임.

무선설비기기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

대 상 기 기	시험수수료 (원)	시험처리기간 (1일 = 8hrs)
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	1,500,000	3 일
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	1,500,000	3 일
222 무선휘출용 무선설비	1,500,000	3 일
223-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	1,300,000	2 일
223-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	1,300,000	2 일
223-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	1,900,000	2 일
224-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	3,000,000	3 일
224-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	3,000,000	3 일
224-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	3,000,000	3 일
225-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(이동국)	1,500,000	3 일
225-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(기지국)	1,500,000	2 일
225-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(중계장치)	1,500,000	2 일
226-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	2,000,000	2 일
226-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	2,000,000	2 일
226-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	2,000,000	2 일
227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	1,500,000	3 일
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	1,500,000	3 일
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	1,500,000	4 일
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1,300,000	3 일
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1,000,000	3 일
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	1,500,000	4 일
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	1,500,000	3 일
238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	1,300,000	3 일
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	1,300,000	3 일
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조정용)	1,000,000	3 일
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데이터전송용)	1,350,000	3 일
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안전시스템용)	1,350,000	3 일
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)	1,350,000	3 일
245-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)	1,350,000	3 일
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중계용)	1,350,000	3 일
247-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)	4,000,000	5 일
247-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/76~77GHz 시험제외)	1,350,000	3 일
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)	1,350,000	3 일
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이동체식별)	1,350,000	3 일
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소형기지국용)	1,350,000	3 일
251 RFID/USN 용 무선기기	1,200,000	4 일
253-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(10GHz)	1,500,000	4 일
253-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(24GHz)	1,800,000	4 일

253-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(5.8GHz)	1,500,000	4 일
254 코드없는 전화기	1,500,000	3 일
255-1 UWB 및 용도 미지정 기기(UWB)	1,500,000	4 일
255-2 UWB 및 용도 미지정 기기(용도미지정기기)	5,000,000	5 일
255-3 UWB 및 용도 미지정 기기(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)	4,500,000	5 일
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	1,100,000	2 일
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	1,200,000	3 일
258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	1,500,000	3 일
259-1 통합 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	1,500,000	5 일
259-2 통합 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	1,500,000	4 일
259-3 통합 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국)	2,100,000	4 일
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)	3,000,000	5 일
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	1,350,000	3 일
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	1,500,000	3 일
264-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(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)	3,500,000	6 일
264-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(76-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)	3,500,000	6 일
266-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3.5 GHz 대역)(이동국)	10,000,000	12 일
266-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3.5 GHz 대역)(기지국)	9,000,000	12 일
266-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3.5 GHz 대역)(중계장치)	9,000,000	12 일
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(재난경보방송용)	1,500,000	2 일
270-1 5G 이동통신용(일정한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) 무선설비의 기기(4.7 GHz 대역)(이동국)	10,000,000	12 일
270-2 5G 이동통신용(일정한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) 무선설비의 기기(4.7 GHz 대역)(기지국)	9,000,000	12 일
270-3 5G 이동통신용(일정한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) 무선설비의 기기(4.7 GHz 대역)(중계장치)	9,000,000	12 일

※ Note

1. 시험수수료

- 1)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.
- 2) 2 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해당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 % 를 추가 적용한다. (단, 1 개의 제품에 2 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및 다량의 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의 30 ~ 50 % 내에서 협의 적용)
 - 2 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(적용 예: AC, DC,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)
 - 운용 주파수대역이 2 이상인 기기(적용 예: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)
 -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(적용 예: 중계기, 전력절감형기기)
 - 2 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(적용 예: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)
 - 2 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(적용 예: 무선 LAN 의 OFDM, DSSS 등)
 - 2 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(적용 예: 무선 LAN 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)
 - 2 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(적용 예: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, 고정장치 등)
 - 2 이상의 송, 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(적용 예: 이동통신용기기, 양방향중계기)
 - 2 이상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을 갖는기기(적용 예: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)
 -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
- 3)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.5 배, 대형은 2 배, 대형 3 상은 3 배의 수수료를 적용함. 4)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.

2. 시험처리기간: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, 하기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.

- 1) 제품의 전원사양(AD/DC, 가변), 안테나 수, 기능, 사용모드에 따라 변동 가능.
- 2) 시료 입고 후 제품 셋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시작 후 시험 완료되는 시간 임.
- 3) 시험 시작 후 부적합이 없는 조건이며, 순수한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성적서 발행 기간은 미 포함임.

전자파흡수율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

대 상 기 기	구 분	시험수수료 (원)	시험처리기간 (1 일 = 8hrs)
두부 전자파 흡수율 측정	기본 요금	2,500,000	1 일
	추가 대역	1,800,000	1 일
	각 대역별 추가모드	1,500,000	1 일
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	기본 요금	2,500,000	1 일
	추가 대역	1,800,000	1 일
	각 대역별 추가모드	1,500,000	1 일

※ Note

1. 시험수수료

- 1) 전자파 흡수율 측정은 기자재별로 시험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기본요금에 대역, 모드 추가 시험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함.
- 2) 추가 대역에 대한 시험은 새로운 시험조건을 요구하므로 기본 요금의 70 %, 동일대역에서 추가 모드에 대한 시험은 기본 요금의 60 % 수준의 비용을 적용함.
- 3) 기본요금은 1 대역, 1 모드에 대한 비용임.
- 4) 기자재의 무선대역/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요금에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넘는 대역, 모드에 대한 추가 시험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함.
예) 추가 시험비용 = 추가 대역, 모드 수 X 추가대역/모드요금
- 5) 두부,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몸통은 추가 모드로 간주하여 시험비용을 산정함.
- 6) 무선방식(예, 무선랜 + WCDMA + LTE 등)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요금에 부가하여 추가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함.
- 7)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.

2. 시험처리기간: 기본 1 개 시험모드 기준이며, 하기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.

- 1) 제품의 형태(타블렛,노트북), 안테나 수, 모드에 따라 변동 가능.
- 2) 시료 입고 후 시험을 위한 제품 셋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시작 후 시험 완료되는 시간임.
- 3) 시험 시작 후 부적합이 없는 조건이며, 순수한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성적서 발행 기간은 미 포함임.

전자기적합성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

대 상 기 기	시험수수료 (원)	시험처리기간 (1일 = 8hrs)
301-1 KS C 9811(산업, 과학, 의료용기기류)	800,000	5일
303-1 KS C 9814-1(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)	600,000	5일
304-1 KS C 9815(조명기기류)	600,000	5일
307 KS C 9990(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)	1,300,000	5일
309 KS X 3141(전력선통신기기류)	2,000,000	8일
310-1 KS C 9040-2(무정전전원장치/EMS공통)	1,500,000	5일
311 KS C IEC 60947-1/ KS C IEC 60947-2/ KS C IEC 60947-4-1(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/EMS공통)	1,500,000	5일
312 KS C 9610-6-3(주거, 상업 및 경공업 환경)	600,000	5일
313 KS C 9610-6-4(산업환경)	600,000	5일
314 KS C 9814-2(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)	700,000	5일
318 KS C IEC 60601-1-2(의료기기류)	2,500,000	10일
319 KS C 9547(조명기기류)	700,000	5일
321 KS C 9610-6-1(주거, 상업 및 경공업 환경)	800,000	5일
322 KS C 9610-6-2(산업환경)	800,000	5일
323-1 KS X3124(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)	1,500,000	5일
324 KS X3137(무선호출용 무선설비)	1,500,000	5일
325 KS X3125(특정소출력 무선기기)	1,500,000	5일
326 KS X3127(간이무선국)	1,500,000	5일
327-1 KS X3128(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)	1,500,000	5일
329 KS X3130(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)	1,500,000	5일
330 KS X3131(생활무전기)	4,000,000	5일
331 KS X3136(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)	4,000,000	5일
332 KS X3126(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)	1,500,000	5일
333-1 KS X3132(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)	1,500,000	5일
334 KS X3139(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)	2,000,000	5일
340 KS X3143(가정용 무선전력 전송기기)	900,000	5일
341-1 KS C 9832(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)	700,000	5일
342-1 KS C 9835(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)	800,000	5일
343 KS C 9800-3(가변속 전력구동기기)	3,000,000	10일
346 KS C 9992(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)	1,350,000	5일
347 KS C 9994(전기자전거)	4,000,000	5일
348-1 KS X 3135(5G 이동통신의 기지국, 중계기, 보조기기)	8,000,000	15일
348-2 KS X 3135(2G, 3G, 4G 이동통신의 기지국, 중계기, 보조기기)	8,000,000	15일
348-3 KS X 3135(5G 이동통신(일정한 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 영하는 경우)의 기지국, 중계기, 보조기기)	8,000,000	15일
349-1 KS X 3129(5G 이동통신의 단말기, 보조기기)	8,000,000	15일
349-3 KS X 3129(2G, 3G, 4G 이동통신의 단말기, 보조기기)	8,000,000	15일
349-5 KS X 3129(5G 이동통신(일정한 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	8,000,000	15일

영하는 경우)의 단말기, 보조기기)		
351 KN 301 489-51(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 위부품)	3,000,000	5일
<p>※ Note</p> <p>1. 시험수수료</p> <p>1) 기본 1개 모드를 기준으로 산정함.</p> <p>2) 제품의 크기, 무게, 전원사양, 제품 모드에 따라 추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함.</p> <p>3)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.</p> <p>2. 시험처리기간: 기본 1개 시험모드 기준이며, 하기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.</p> <p>1) 제품의 크기, 무게, 전원사양,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.</p> <p>2) 시료 입고 후 시험을 위한 제품 셋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시작 후 시험 완료되는 시간임.</p> <p>3) 시험 시작 후 부적합이 없는 조건이며, 순수한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성적서 발행기간은 미포함임.</p>		

전자파강도 시험수수료 및 시험처리기간

대 상 기 기	시험수수료 (원)	시험처리기간 (1일 = 8hrs)
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(IH) 기능이 있는 기기	500,000	1일
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(IH) 기능이 있는 기기	500,000	1일
603 전기담요 및 매트, 전기침대. 단,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	500,000	1일

※ Note

1. 시험수수료

- 1) 기본 1개 모드를 기준으로 산정함.
- 2) 제품의 크기, 무게, 전원사양, 제품 모드에 따라 추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함.
- 3)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.

2. 시험처리기간: 기본 1개 시험모드 기준이며, 하기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.

- 1) 제품의 크기, 무게, 전원사양, 제품의 모드에 따라 변동가능.
- 2) 시료 입고 후 시험을 위한 제품 셋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시작 후 시험 완료되는 시간임.
- 3) 시험 시작 후 부적합이 없는 조건이며, 순수한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성적서 발행기간은 미포함임.